

1998. 3. 24

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기획총무위원회

<전문위원 박종근>

순서

-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---- 2

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2조(위촉)의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이 “강제”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“임의”규정으로 재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제2조(위촉)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“위촉한다.”를 “위촉할 수 있다.”로 개정.

■ 관련근거

-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

■ 검토보고

-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안은 제2조(위촉)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“위촉한다.”는 강제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“위촉할 수 있다.”의 임의규정으로 자구수정코저 한 내용이며
- 고문변호사 위촉은 자치단체의 민사소송, 행정소송사건등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고 사건수임에 따른 소송비용, 승소사례금, 위촉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사건빈도에 따라 위촉을 하기위한 수정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.

첨부 : 소송비용 지급기준

(별표)

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

구 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
	내 용	착 수 금	승소사례금
민사소송	1. 신청사건 ○ 일반신청 ○ 중요신청	본안의 1/2	
	2. 본안사건(소송물가액기준) ○ 200만원 미만 ○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○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 ○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 ○ 2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 ○ 5,000만원 이상 1 억 원 미만 ○ 1 억 원 이상	200,000원 300,000원 350,000원 450,000원 800,000원 1,500,000원 2,000,000원	1. 60%이상 승소확 정의 경우 착수 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. 화해, 취하의 경 우 착수금의 1/2
행정소송	1. 신청사건	민사소송에 준함	없 음
	2. 본안사건 ○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○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	민사소송에 준함 300,000원	민사소송과 동일
기 타	1. 인 지 대 2. 송 달 료 3. 검 증 비 4. 출 장 비	실 액 실 액 실 액 1회 10만원 이내	